



법. 률. 칼. 럼.



이형찬 변호사 · 수의사
법무법인 수호

축산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1)

오리농장을 운영하다 보면 농장 주변에 도로가 나거나 공용시설 등이 들어서 손실보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오리농가는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로나 댐 건설 등의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의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수용과정에서의 거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오리농가는 보상금의 증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며,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재결과정에서는 전략적으로 감정평가에 대처해야 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오리농가의 특수한 사정을 법원의 감정평가과정에서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오리농가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축산보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오리농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과정에서 자신의 축산영업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축산업’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제1호), ②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제2호), ③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제3호)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축산업’의 요건이다.

먼저 오리농가는 150마리 이상의 오리를 기를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축산업’의 요건에 해당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②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제1호의 경우(①에

-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수의사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의료, 보험, 식품·농림·축산, 유공)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발전대책마련 TF회의 위원
- 녹색소비자연대 건강안전운영위원(식품분야)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정회원
- 건국대학교 농식품안전인증센터 운영위원
- 서울시수의사회 자문변호사, 대한수의사회 청년소통위원

문의. leeavocat@gmail.com
010-6742-0618

※ [시행규칙 별표 3] 축산업의 가축별 기준마리수

가 축	기준마리수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양	20마리
꿀벌	20군

해당하는 경우), 「축산법」 제22조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축산업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고, 축산업의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축산업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에 대하여는 ‘등록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에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068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리농가가 「축산법」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가 및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마리수에 해당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축산보상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오리농가가 150마리 이상의 오리를 사육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리 이외의 돼지, 염소, 토끼와 같은 가축을 함께 사육할 경우 ‘축산업’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제3호는 여러 가축을 함께 기르는 경우에 대

한 요건인데(③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 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 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의 경우에 ‘축산업’에 해당한다. 계산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이해해 보자.

오리 70마리와 사슴 5마리를 키우는 경우 비율의 합계가 0.8($0.8 = 1/150 \times 70 + 1/15 \times 5 = 0.8$)로 1에 미달되어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리 50마리와 돼지 15마리를 키우는 경우 비율의 합계가 1.08($1.08 = 1/150 \times 50 + 1/20 \times 15$)로 1이상에 해당되어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에 해당한다. 즉, 오리농가가 오리 150마리 이상을 기르지 않거나,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리와 함께 다른 가축을 기르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 제4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축산업’에 해당할 수 있으니 선불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준마리수의 ‘사육시점’이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기본조사 당시와 평가당시, 계약 체결 당시 등 어느 경우이든 기준마리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오리농가는 손실보상 과정에서 매매를 통해 토지보상법상의 축산보상 대상에 미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다음 칼럼에서는 ‘축산보상’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